

위원회 절차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의  
제27차 국제 컨벤션

1. 위원회 회의는 대의원과 대체 대의원이 순서대로 연설하고, 듣고, 말할 수 있는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온라인 위원회 회의 참석 방법은 SEIU 컨벤션 웹 사이트에 나와 있다. 위원회 회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기록할 회원이나 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2. 대의원 또는 대체 대의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 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의견이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대의원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의견을 표하거나 발표자와 논쟁을 해서는 안된다.

3. 위원회 회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회장은 회의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다른 위원회 위원에게 회장직을 담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지만 결의안의 채택 또는 승인, 정관 개정, 항의 또는 항소와 같은 항목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적인 조치는 발의, 재청 및 다수결로 처리된다. 위원회는 위원 당 1표의 투표를 받는다.

5. 위원회 위원 만이 절차상의 사안 또는 위원회에 제시된 다른 사안에 투표할 수 있다.

6. 대의원 또는 대체 대의원만이 위원회에 연설할 수 있다.

7. 정관 및 규정에 대한 결의안 또는 수정안을 적절히 제출한 지부의 대의원 1명에게는 최대 3분간 해당 위원회에서 찬조 연설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모든 위원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사안에 대해 다른 대의원 또는 대체 대의원으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으며, 발언자 당 2분으로 제한된다. 회장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 추가 발언자를 승인하기 전에 모든 지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표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원회는 대의원이 위원회에서 연설하는 회의의 일정을 잡기로 선택할 수 있다. 회장은 위원회에 제기할 사안의 수 및/또는 위원회에서 연설하기 원하는 대의원 또는 대체 대의원 수에 따라 발언의 길이와 수를 수정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복수의 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다. 각 공개 위원회 회의의 의제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위원회 회원 소개
- 의제 검토

- 결의안, 개정안, 항의 또는 항소에 대한 토론

9. 회장은 집행 회의에서 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의원 및 대체 대의원이 제시한 제안 및 의견을 논의 및 평가하고, 컨벤션에 대한 권고안에 투표하고, 행정 업무 또는 기타 위원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0. 위원회 회의의 무단 비디오 녹화 또는 녹음은 금지된다.

11. 해당 위원회는 제기된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결의안 또는 수정안을 준비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에 관한 위원회 자체의 권고안과 함께 이외의 모든 언급된 결의안 또는 수정안을 컨벤션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여러 결의안 또는 개정안 중 하나만 보고하기로 선택하거나, (2) 동일한 주제에 대한 여러 결의안 또는 개정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일 결의안으로 통합하여 결합된 결의안을 원안으로 보고하거나, (3) 제안된 결의안 또는 수정안을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4) 해당 권고안을 국제 이사회에 사안으로 회부할 수 있다. 소수 의견은 없다.

**[참고: SEIU C&B 제4조 14항에 따르면 모든 결의안은 "컨벤션이 시작되기 최소 30일 전에 지부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출석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으면 컨벤션에서 심사될 수 없다. 국제 이사회는 만장일치 동의 없이 컨벤션 기간에 언제든지 결의안을 컨벤션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SEIU C&B 제14조에 따르면 "개정안은 컨벤션 결의안 제출에 대해 문서에 대해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2. 위원회는 여러 결의안 또는 정관 개정안을 하나의 발의안으로 심사하고 하나의 안건으로 투표할 수 있다.